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참여자 2차 추가모집 공고

우리 시·군·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1. 근무조건

▢ 근무기간: 2026년 10월 ~ 12월(3개월)
▢ 근무시간: 10월~12월, 주 25시간
▢ 근무내용: 60세 이상 노인 안마서비스 제공
▢ 근 무 지: 사)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전남지부 보성군지회(보성관내 경로당 파견)
▢ 보 수: 10월~12월 1,351,920원(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)
＊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2. 모집분야 및 기간

▢ 추가 모집인원: 1명
▢ 추가 모집기간: 2026. 09. 07(월)~ 09. 18(금)
▢ 서류전형 발표: 2026년 09월 18일(금) 18:00, 면접시험 : 2026년 9월 21일(화) 개별안내

3.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

▢ 신청자격

○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「의료법」 제82조에 따라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또는 안마사자격 발급 예정자인 미취업자(26년 3월 이전 안마사 자격증 제출 필요)

– 「의료법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('25년 1월 1일 이후 보수교육 이수한 사람)

＊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보수교육 면제·유예 확인서 제출

※ 안마원,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

주 의	※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

▢ 선발방법: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

<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>

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)
※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『근로계약서』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(ex. '26년 신청자의 경우, '25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)
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
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, 기관 단체의 대표, 임직원
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
※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『근로계약서』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
※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*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
*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65세 이상인 자,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 행정도우미,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
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
※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)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
⑦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,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※ 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[의제01254-15864호(1987.6.26.)]

4. 제출서류

<<필수서류>>

① 참여신청서[서식7]: 희망직무 기재 필수
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[서식8]: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, 장애등록 여부,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, 미취업 상태 여부, 임직원 겸임 여부 작성
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[서식9]
※ '참여신청서' 및 '개인정보동의서' 작성 시, 자필서명 필수
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(ex. 도장 등)
④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자격증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안마사자격 관련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면제·유예확인서
※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3월 이전(자격증 수령 즉시)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

※ 신청자의 '장애인등록여부' 및 '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'은 시군구에서 조회,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서 [서식12-1]~[서식12-3] 참고

<<추가서류>> *해당자에 한함

구 분	증 빙 서 류
①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사업 참여 신청자	**-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자격증** ※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3월 이전(자격증 수령 즉시)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-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20조에 따른 안마사자격 관련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면제·유예 확인서

구 분	증 빙 서 류
② 자격증 소지자	- 안마사 자격증 사본 1부
③ 졸업예정자	-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※ 졸업예정증명서 등
④ 여성가장	구 분 / 첨 부 서 류 공통사항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: 부모 부양 시 –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(의사진단서, 생계급여수급자 등) 선택사항: 가출·행방불명 – 실종신고서 선택사항: 장애 – 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명서,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선택사항: 질병으로 요양 중 – 의사의 진단서 선택사항: 군복무 – 복무확인서 선택사항: 학교 재학 – 재학증명서 선택사항: 교도소 입소 – 수용증명서, 형확정판결문 선택사항: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– 직업안정기관(고용센터)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선택사항: 이혼소송 제기 – 이혼소송확인서 선택사항: 기타 가족 생계 부양 – 통·반장의 확인서
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	-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
⑥ 취업지원대상자	-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※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,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,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,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
⑦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등	- 상장사본(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) - 상장사본(장애인일자리관련 시·도지사 및 시·군·구청장 표창) ※ 최근 3년(23~25년) 이내 사용가능

※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

(참고)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*하는 여성을 말함
① 미혼여성이거나,
② 기혼여성이나 이혼·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
③ 신체·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*하는 여성
* 18세 미만(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)인 자녀를 양육,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, 장애·질병이 있는 동거가족(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)을 부양
※ 관련근거: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-자치단체 합동지침

○ 접수방법: 방문접수, FAX(061-852-1567), 우편접수, 이메일(bshpsc1525@daum.net)

○ 접수처: 사)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전남지부 보성군지회

- 주소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성읍 용문길 18, 공설운동장
- 전화번호: 061)852-1515, 061)852-1525

5. 기타 참고사항

○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(1년) 동안 '적극적인 구직활동'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(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)

○ 사업유형 변경(중도종료 후 재입사) 시 퇴직금 미지급, 1년 미만시 퇴직금 미지급

※ 예시: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(1.1.~5.31.) → 일반형일자리 전일제(6.1.~12.31.)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

○ 사업유형 변경(중도종료 후 재입사) 연가: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

○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

*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참조(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)

○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외될 수 있음

* **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** 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)
 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(이하 "성범죄"라 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(약식명령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)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·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(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)해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* **「장애인복지법」** 제59조의3(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
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(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(약식명령을 포함한다)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)부터 일정기간(이하"취업제한기간")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(이하"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")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* **「사회복지사업법」** 제35조의2(종사자)
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. 다만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.
* **「노인복지법」** 제39조의17(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
 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(약식명령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)부터 일정기간(이하 "취업제한기간"이라 한다)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(이하 "노인관련기관"이라 한다)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(이하 "취업제한명령"이라 한다)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(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)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*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

○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

*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(직업)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'직업적응훈련, 직업훈련'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,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**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**에 포함(노동부 차별개선과-2468)

○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

[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]

*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참조

- 이 고지는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,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
-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**2026년 09월 21일부터 2026년 10월 06일**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다만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
-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[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]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(061-852-1567) 또는 이메일 (bshpsc1525@daum.net)로 제출하면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.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  *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

-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10월 06일(결과발표일로부터 14일 이상 180일 이하)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,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「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」에 따라 보관·관리될 예정입니다.

2026년 09월 07일
사)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전남지부 보성군지회

○ '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' 서식은 보성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(구인구직)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–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.

– 기타 문의사항은 사)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전남지부 보성군지회(☎061-852-1515, 852-152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9월 7일

(사)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전남지부 보성군지회장 

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

졸업예정자	☐ 특수학교(급)	☐ 대학교			접수번호	
신청분야 ※ 일자리 유형 (일반형, 복지, 특화형) 중 택1	☐ 일반형일자리	1순위	☐ 전일제 ☐ 시간제	2순위	☐ 전일제 ☐ 시간제	
	☐ 복지일자리	☐ 참여형		☐ 특수교육-복지연계형		
	☐ 특화형일자리	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		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		
희망직무	① (관련자격증- 있음☐ 없음☐ / 관련근무경험- 있음☐ 없음☐)					
	② (관련자격증- 있음☐ 없음☐ / 관련근무경험- 있음☐ 없음☐)					
성 명		연락처	[집]			
			[핸드폰]			
			[이메일]			
주민등록번호	(만 세)		성별	☐ 남 ☐ 여		
주 소						
소득수준	☐ 기초생활수급자 ☐ 차상위계층 ☐ 해당사항 없음		장기요양등급 판정유무	☐ 유 ☐ 무		
여성가장	☐ 해당 ☐ 비해당		취업지원대상자	☐ 해당 ☐ 비해당		
장애유형		장애정도	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			
특수교육 대상자	☐ 특수교육 대상자 *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일자리 참여자만 해당		이동수단	☐ 도보 ☐ 대중교통 ☐ 자가용 ☐ 기타		
주 요 이 력 사 항						
최 종 학 력	☐ 무학 ☐ 초졸 ☐ 중졸 ☐ 고졸 ☐ 전문대졸 ☐ 대졸 이상					
주요경력사항	(~)					
	(~)					
직업훈련 기관명						
직업훈련 훈련기간	~		~			
직업훈련 훈련직종						
자격면허	1) 2)	전산 능력	☐ 문서작성 ☐ 표계산 ☐ 인터넷 ☐ 기타( )			
사업자등록 유무	☐ 유 ☐ 무	취업상태 여부	☐ 취업상태 ☐ 미취업상태 * 타 재정지원일자리(공공근로, 자활, 노인일자리 등 정부 재정일자리) 참여 여부 포함			
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해당여부			☐ 유 ☐ 무			
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	☐ 유 ☐ 무(참여기간: 일자리사업명:)					
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참여자 해당여부	☐ 유 ☐ 무 * 관련근거 - 최근 3년(23년~25년)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상,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, 장애인일자리관련 시·도지사 및 시·군·구청장 표창 사본					

위와 같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.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,
상기 개인정보 중 일부는 장애인일자리 사업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됨에 동의합니다.

2026 년 9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사)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전남지부 보성군지회장 귀하

붙임 1. 참여자 정보 확인서[서식8] 1부.
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목적 외 이용·제3자 제공 안내·동의서[서식9] 1부.
3. 그 외 해당자에 한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(모집 공고문 참조) 각 1부.

참여자 정보 확인서

참여자 성명:_____

연락처:_____

구분	확인사항	
사업자등록증 유무	□ 있음	□ 없음
장애인등록 여부	□ 있음	□ 없음
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	□ 있음	□ 없음
미취업 상태 여부	□ 취업	□ 미취업
임직원 겸임 여부*	□ 해당	□ 미해당

*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, 기관단체의 대표, 임직원 겸임 여부

※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, 선발이 취소되거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즉시 중단 조치될 수 있음을 확인함

신청인: (서명 또는 인)

2026년 9월 일

사)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전남지부 보성군지회 귀하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목적 외 이용·제3자 제공 안내·동의서

사)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전남지부 보성군지회는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·이용 및 목적 외 이용·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.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

[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]

· 본인식별절차에 이용
·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, 지원 등 사업운영
·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적격 여부 확인(장애유무 및 장애정도, 장기요양등급판정유무조회, 사업자등록여부조회, 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이력조회,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정보, 건강보험득실확인여부조회 등)
·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정보 입력 및 관리
·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 및 사업유지·확대를 위한 근거자료
· 만족도조사에 필요한 참여자 기본 정보
·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범죄 경력조회
· 취업정보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확인
·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취업정보 제공

※ 위와 같이 수집·이용되는 개인정보는 장애인일자리 및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사업 전산시스템에 활용됩니다.

[수집·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]

· 성명, 연락처, e-mail주소, 성별, 주소, 소득수준, 학력, 경력, 직업훈련, 자격면허, 전산능력,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 및 기간, 보수
· 은행계좌(통장사본), 근무상황부, 보수대장, 참여조건합의서

[근거 법령]

○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(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)

[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]

○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(보유기간 종료일 후 개인정보 즉시 파기)

2.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

[고유식별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]

· 본인식별절차에 이용
·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, 지원 등 사업운영
·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적격 여부 확인(장애유무 및 장애정도, 장기요양등급판정유무조회, 사업자등록여부조회, 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이력조회,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정보, 건강보험득실확인여부조회 등)
·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정보 입력 및 관리
·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 및 사업유지·확대를 위한 근거자료
· 만족도조사에 필요한 참여자 기본 정보
·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범죄 경력조회
· 취업정보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확인
·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취업정보 제공

※ 위와 같이 수집·이용되는 개인정보는 장애인일자리 및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사업 전산시스템에 활용됩니다.

[수집·이용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]

·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등

[근거 법령]

·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[고유식별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]

○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(보유기간 종료일 후 개인정보 즉시 파기)

[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]

○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됨을 안내드립니다.

3.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

[민감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]

· 본인식별절차에 이용
·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, 지원 등 사업운영
·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적격 여부 확인(장애유무 및 장애정도, 장기요양등급판정유무조회, 사업자등록여부조회, 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이력조회,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정보, 건강보험득실확인여부조회 등)
·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정보 입력 및 관리
·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 및 사업유지·확대를 위한 근거자료
· 만족도조사에 필요한 참여자 기본 정보
·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범죄 경력조회
· 취업정보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확인
·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취업정보 제공

※ 위와 같이 수집·이용되는 개인정보는 장애인일자리 및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사업 전산시스템에 활용됩니다

[수집·이용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]

·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(복지카드),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여부, 특수교육 대상자 여부

[근거 법령]

○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[민감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]

○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(보유기간 종료일 후 개인정보 즉시 파기)

[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]

○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됨을 안내드립니다.

4.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고지

제공처	목적	항 목	기 간	근 거
지자체 (시도,시군구)	장애인일자리사업 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·감독	참여인원수 직무유형, 근무기관, 근무상태 등 비식별 통계자료	보조사업 운영 종료 시까지	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,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(법령상 관리·감독 목적)
한국 장애인 개발원	· 참여자 취업정보 제공 및 정보제공에 대한 결과확인	· 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(휴대전화번호), e-mail 주소, 학교, 학년, 최종학력, 참여기관, 사업유형, 직무유형, 장애유형, 장애정도, 기초생활 수급여부	· 한국장애인개발원 내부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기간 준영구	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
사회보장 정보원	· 참여자변동 정보 조회	· 성명, **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**, 급여금액, 급여지급일, 사업참여일, 참여종료일, 사업시작일, 사업종료일	· 사회보장정보원 내부지침에 의거 2년간 보유 후 개인정보 파기	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
한국고용 정보원	·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조회	· 성명, **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**, 급여금액, 급여지급일, 사업참여일, 참여종료일, 중도종료일, 중도종료사유, 근무처명, 근무처, 사업자등록번호, 성별, 생년월일, 연락처, 주소, 우편번호, 취약계층정보	· 한국고용정보원 내부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기간 준영구(요청시 파기)	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2항,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5조 3항
경찰서	· 범죄경력조회	· 성명, **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**, 성별, 주소, 연락처 수집된 개인정보	· 경찰청 내부지침에 의거 경력조회 개인정보 보유	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,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
한국장애인 고용공단	· 범부처 취업지원시스템 서비스 의뢰자 서비스 결과	· **주민등록번호**, 서비스제공시작일자, 서비스제공종료일자, 희망지원 처리상태코드	·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부 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 기간 준영구	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,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조
국민건강 보험공단	·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적정성 확인	· 성명, **주민등록번호**(인정관리번호 확인가능하면 **인정관리번호**로 대체 가능), **시군구(거주지), 참여사업명, 사업유형, 직무명, 참여상태, 사업참여일, 참여종료일, 중도종료일, 중도종료사유, 수행기관명, 수행기관 연락처**	·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기간 준영구	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, 노인장기요양법 제15조, 제64조
※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.				

본인은 본 "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목적외 이용·제3자 제공 안내·동의서"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습니다.

2026년 9월 일

성 명: (서명 또는 인)